

시행일:2019.05.28. 입력자:장다점 확인자:원대희

특수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학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 록

제2조(등록) ①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석사학위과정 원생으로서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④특수대학원학칙 제33조의1(학위논문 대체과정)제2항의 해당자는 추가 학점 이수를 위한 등록의 경우에도 제3항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신설 2019.05.28.)

⑤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점당 등록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등록금의 반환) ①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한 경우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2-4-2~2 제2편 학 칙

수 없는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로 입학할 포기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전항 제3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등록금 납부 후 입학포기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③등록금의 반환액은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하여 학사일정표에 의한 총 수업일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기준에 따라 학기 개시일전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학기 개시일전 : 등록금 전액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④장학금 및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은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장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및 수강신청

제4조(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편성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과목의 개설) 학과 주임교수는 각 학과에서 편성된 교육과정 중에서 그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정하여 개강 3개월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①타계열 전공 입학자는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특수치료대학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5.25., 2018.09.20.)

②선수과목은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③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또는 석사학위취득 졸업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총 15학점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별로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은 학기당 4학점 이내, 총 20학점 범위내에서 이수시킬 수 있으며 2009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시킬 수 있다.

⑤선수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인정학점은 P로 표시한다.

⑥선수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원생은 입학 후 소정의 수강신청기간에 선수과목 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강사 제청)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3개월 전까지 강사추천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원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은 학과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한 특수대학원 원생의 수강신청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별로 수강신청을 9학점까지 정하거나, 연구학점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12학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선수과목은 수강신청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4.02.27., 2018.09.20.)

④각 대학원 전공별로 책정된 교과목의 과목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교육대학원생 중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실습학점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2009학년도 3월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교육실습 학점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을 취득해야 한다.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⑥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학과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학생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험 및 학점

제10조(시험 및 성적) ①시험에 대한 성적평가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학점의 인정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과목에 한하되 평점 2.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학위과정 수료사정에는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③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점	4.5
A0	90 - 94점	4.0
B+	85 - 89점	3.5
B0	80 - 84점	3.0
C+	75 - 79점	2.5
C0	70 - 74점	2.0
F	69점 이하	

제11조(학점) ①학점은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하되 1과목은 2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각 대학원별 교과과정에 따라 3학점 과목을 둘 수 있다.

②원생은 수업연한 이내에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논문지도학점(연구학점)은 학기당 2학점으로 하며 원생은 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특수치료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5.25)

④연구학점은 학위과정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B학점(8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는 연구학점을 포함한다.(개정 2012.05.25)

⑤동일한 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1과목으로 인정한다.

⑥수업일수 3분의 2를 경과한 자가 군입대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소정의 평가를 거쳐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수과목 및 학점) ①각 대학원 원생이 취득해야 할 이수과목과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2.27., 2014.11.18., 2015.02.13., 2015.08.28.,

2016.09.30., 2017.09.26., 2018.09.20., 2018.12.20.)

대학원	경영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8학점, 전공과목 16학점	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8학점 전공과목 16학점	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8학점(임상 영양학과 6학점), 전공과목 16학점(임상 영양학과 24학점)
	비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12학점, 전공과목 18학점	비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10학점, 전공과목 20학점	비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9학점, 전공과목 21학점	비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10학점(임상 영양학과 6학점), 전공과목 20학점(임상 영양학과 24학점)
	※ 단, 글로벌경영(MBA)학과는 공통/전공 구분없이 3학점 10과목	전문간호사과정 : 공통과목 13학점 전공과목 20학점		
	24(30)학점	24(30)학점 전문간호사과정 33학점	24(30)학점	24(30)학점, 임상영양학과 30학점
연구과정	전공과목 12학점	공통과목 4학점 전공과목 8학점		
	12학점	12학점		

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정책대학원	산업환경대학원 공학계열	산업환경대학원 예체능계열
석사과정	논문 작성자 : 교직과목 8학점, 전공과목 16학점, 연구학점 6학점	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4과목, 전공과목 8과목	논문 작성자 : 전공과목 24학점,	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8학점, 전공과목 16학점
	비논문 작성자 : 교직과목 8학점, 전공과목 22학점	비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5과목, 전공과목 10과목	비논문 작성자 : 전공과목 30학점	비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8학점, 전공과목 22학점
	30학점	12(15)과목	24(30)학점	24(30)학점
연구과정	교직과목 4학점 전공과목 8학점	공통과목 2과목 전공과목 4과목	전공과목 12학점	공통과목 4학점 전공과목 8학점
	12학점	6과목	12 학점	12학점

2-4-2~6 제2편 학칙

대학원	스포츠문화대학원	대학원	게임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8학점	석사과정	논문 작성자 : 전공과목 24학점
	비논문 작성자 : 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24학점		비논문 작성자 : 전공과목 30학점
	24(30)학점		24(30)학점
연구과정	전공과목 12학점	연구과정	전공과목 12학점
	12학점		12학점

②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가 취득해야 할 이수과목은 별도로 정하되 취득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의 교육심리 및 상담 전공은 교직과목을 4-6 학점 이수하고 잔여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논문작성자의 경우 전공과목 12과목, 비논문작성자의 경우 전공과목 15과목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과정의 경우에는 전공과목 6과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7.)

제13조(교원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 원생의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교원자격검정업무지침에 따른다.

②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점교류) ①학점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는 협정서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제적·퇴학 및 재입학

제15조(제적, 퇴학) ①재학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징계 및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②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별지서식 1호)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재입학) ①제15조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외한다.

②재입학시에는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그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과정

제17조(연구과정) ①연구생의 입학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②연구교과목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교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2호)를 발급할 수 있다.

③연구생으로서 정규학위과정의 교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제증명

제18조(제증명) ①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대학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각 특수대학원별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시행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4-2~8 제2편 학 칙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중 제6조 제4항의 단서조항은 2009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2.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특수대학원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18.)

이 시행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2.13.)

이 시행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